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칙

제정 2012. 9. 14. 개정 2014. 7. 21.

개정 **2**018. 7. 10.

개정 2023. 6. 5.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『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진흥원의 동반성장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의
 - 2. 진흥원의 동반성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
 - 3. 기타 진흥원의 동반성장과 관련한 주요 의결사항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내부위원,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4.7.21.>
 - ② 위원장은 진흥원장이 맡고, 내부위원은 「직제규정」에 의한 본부장급이 맡는다.<개정 2014.7.21., 2018.7.10.>
 - ③ 외부위원은 비상임이사 및 학계인사를 호선하여 구성한다.<개정 2014.7.21.>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- 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년간 2회이상 개최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-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한다.
- **제6조(운영부서)**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실무적인 사무 총괄은 ESG추진팀(TF)에서 전담한다. <개정 2023.6.5.>
- **제7조(실무위원회)**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.
 -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,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7. 21.>

이 규칙은 부원장 인사발령 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7. 10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1일자로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6. 5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